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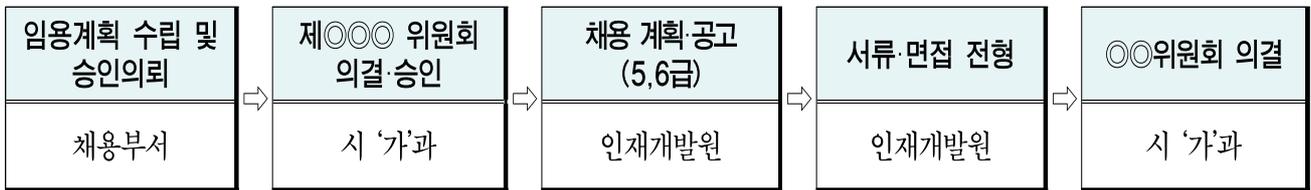
# 감 사 위 원 회

## 통 보

**제 목** 임기제 공무원 학위·경력 요건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행정국  
**내 용**

서울특별시 행정국 ‘가과(이하 ‘가과’라 함)에서는 채용부서에서 승인 요청한 일반 임기제(5, 6급) 임용계획을 제○○○위원회 의결·승인을 거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함)에 채용 시험(채용공고 → 서류·면접전형)을 의뢰하고 있다.

###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 인재개발원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학위·경력 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제9호)으로 임용하도록 하였고,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자격 등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에서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고,

2014. 10. 7.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일반 임기제 경력경쟁 임용 응시요건” 등 개선계획<sup>9)</sup>(‘가’과-25327)과 ‘서울특별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실무’에서 학위·경력 요건 적용의 경우 반드시 관련 학위 소지자에 한해서만 응시 가능하므로 특수 전문분야 채용 시에만 적용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규상의 자격요건 또는 결격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과 자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일반 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서 학위·경력요건(법제27조제2항제9호)을 적용할 경우 임용령에 기술된 과학기술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sup>10)</sup>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 해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7년도 제11회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나’과-10287)을 [표]와 같이 실시하면서,

**【표】 채용 분야별 응시 현황**

임용 분야	채용부서	직급	자격요건 적용기준			채용 인원	응시 인원
			경력	학위·경력	자격		
0000전문요원(I)	‘다’ 과	임기제 ▲급	○			1명	3명
0000요원	‘라’ 관	”	○			1명	9명
00·000요원	‘마’ 관	”	○			1명	5명
0000요원	”	”	○			1명	18명
0000전문요원(II)	‘바’ 관	”		○		1명	5명
00000전문요원(회계사)	‘사’ 과	”			○	1명	4명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콘텐츠 제작·운영 등 직무 내용이 유사한 ○○○○전문요원에 대한 응시자격요건으로서 ‘다’과 근무 예정인 임기제 6급 ○○○○전문요원(I)은 경력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sup>11)</sup>을 적용한 반면, ‘바’관 근무예정 ○○○○전문요원(II)은 학위·경력요건(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9호)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정하고,

9) 학위 및 경력요건 동시 적용 → 학위에 따른 응시요건과 경력에 따른 응시요건 구분 적용  
 10)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 제3호(경력요건)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

‘바’관의 ○○○○전문요원(Ⅱ)에 응시한 총 5명 가운데 모집예정 인원(1명)의 3배수(3명)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3명) 가운데 응시번호 \*\*\*\*번 ‘갑’의 경우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해당분야 근무경력 최하 점수(25점 만점에 5점)를 받고도 학위 요건(석사)이 충족되어 합격한 반면,

\*\*\*\*번 ‘을’은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에서 201\*.\*\*.\*\*.~201\*.\*\*.\*\*.(\*\*개월)기간 동안 수출마케팅지원, 해외시장조사, 대외협력 등의 업무 경력이 있는데도, 관련분야 학위에 해당되지 않아 전공분야 부적격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고,

\*\*\*\*번 ‘병’ 또한 ○○○○ ○○○○○(\*\*개월) 등 총 \*\*개월의 경력이 있는데도 관련분야 학위에 해당되지 않아 탈락하는 등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그 밖의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최근 4년간(2014~2017년도) 제○○○위원회에서 승인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 시, 학위·경력 요건(91건) 가운데 11건은 특수전문분야가 아닌데도 학위·경력요건으로 응시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참고 ② - ① 학위·경력 자격요건 설정 법령 미 준수 현황]

**【 조치할 사항 】**

행정국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 밖의 특수 전문분야’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